

부천시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5년 3월 18일 전덕생 의원등 14명 제출

나. 회부일자 : 2005년 3월 18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118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 (2005년 3월 21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요지

(제안 설명자 : 전 덕 생 의원)

□ 제안이유

- 현행 부천시주차장조례 규정에서는 노인복지법 제26조 규정에 의한 경노우대 대상에 해당하는 자의 자가운전 차량에 대하여 주차요금을 경감하고 있지 않아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어 어르신들의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하고 경노효친 사상의 고양을 위하여
- 부천시주차장조례 제6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별표 1」 3호 “사”목을 신설하여 노인복지법 제26조에 의한 경노우대 대상에 해당하는 자의 자가운전 차량에 대하여는 2시간 무료후 해당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경감하고자 함.

□ 주요골자

- 노인복지법 제26조 규정에 의한 경노우대 대상에 해당하는 자의 자가운전 차량에 대하여는 2시간 무료후 해당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경감하고자 함.(안 제6조제1항 「별표 1」 3호“사”목 신설)

3. 주요질의 및 답변 요지

질 의	답 변
○ 본인의 소유차량으로 제한하는 것인지, 아니면 타인 소유차량을 운전해도 경감 혜택을 받는 것인지, 제3자의 차량에 동승해도 경감혜택이 주어지는 것인지 구분해 주기 바람.	○ 조례 개정(안)에서는 “경로우대 대상에 해당하는 자의 자가운전 차량에 대하여는 2시간 무료후”로 규정하고 있어 자가소유 차량을 본인이 직접 운전하는 경우에 한하는 것임.

4. 토론요지

가. 찬성토론 : 없 음

나. 반대토론 : 없 음

5. 심사결과

○ 수정 의결

6.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부천시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제367호
의결 년월일	2005. 3. 24 (제118회)

제안년월일 : 2005. 3. 23.

제안자 : 건설교통위원장

1. 수정이유

- 노인복지법 제26조 규정에 의거 경로우대 대상에 해당하는 자의 자가 운전 차량에 대하여 주차요금을 경감하여 어르신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한편 경노효친 사상을 고취하고자 국가유공자, 장애인 자가운전 차량과 동일한 주차요금 경감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나,
- 국가유공자, 장애인 자가 운전자와 동일한 경감 적용은 시민공감대 형성의 미흡함이 있고 2시간 이내 무료주차이면 장기 주차를 방지하고 업무 수행이 가능하다는 판단으로 이를 보완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경로우대 대상 자가운전 차량에 대하여 2시간 무료 주차후 해당 주차요금의 50% 경감 규정 삭제(안 제6조 제1항 「별표1」 3호 사목)

부천시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부천시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6조 제1항 「별표1」 3호 사목 중 “해당하는 자의 자가운전 차량에 대하여는 2시간 무료 주차후 해당요금의 50퍼센트를 경감한다.” 를 “해당하는 자가 소유한 차량을 자가 운전하는 경우 2시간 이내에서 주차요금을 무료로 한다.” 로 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6조 제1항 「별표 1」 3호 가. ~ 바. (생략) <u>〈신 설〉</u>	제6조 제1항 「별표 1」 3호 가. ~ 바. (현행과 같음) 사. 노인복지법 제26조에 의한 경노우대 대상에 <u>해당하는 자의</u> <u>자기운전 차량에 대하여는 2시간</u> <u>무료후 해당 주차요금의 50</u> <u>퍼센트를 경감한다.</u>	제6조제1항 「별표 1」 3호 가. ~ 바. (개정안과 같음) 사. ----- ----- <u>해당하는 자가</u> <u>소유한 차량을 자기운전 하는</u> <u>경우 2시간 이내에서 주차요금을</u> <u>무료로 한다.</u>					

[수정안 포함]

부천시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천시주차장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부천시주차장조례”를 “부천시 주차장 조례”로 한다.

제6조제1항 「별표1」 3호에 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사. “노인복지법 제26조에 의한 경노우대 대상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한 차량을 자가운전하는 경우 2시간 이내에서 주차요금을 무료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p style="text-align: center;"><u>부천시주차장조례</u></p> <p>제6조제1항 「별표 1」 3호 가.~바. (생략) 사. <u>〈신 설〉</u></p>	<p style="text-align: center;"><u>부천시 주차장 조례</u></p> <p>제6조제1항 「별표 1」 3호 가.~바. (현행과 같음) 사. <u>노인복지법 제26조에 의한 경노 우대 대상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한 차량을 자가운전하는 경우 2시간 이내 에서 주차요금을 무료로 한다.</u></p>